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등(안 제1조 ~ 제4조)
- 사용허가 등(안 제5조 ~ 제 8조)
- 시설입주 등(안 제9조 ~ 제10조)
- 관리·운영의 위탁 등(안 제11조 ~ 제12조)
- 그 밖에 준용사항 및 시행규칙 등(안 제13조 ~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장애인회관 건립은 2014년 6월, 도지사 공약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, 2019년 4월 충북개발공사와 건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,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주요 기능은 도 단위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및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
□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개요

- 위 치 : 청주밀레니엄타운(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-18 일원)
- 사업기간 : 2019. 4. ~ 2021. 12. / **공정률 65%**
- 규 모 : 부지 3,300㎡(1,000평), 건물연면적 2,991㎡(906평)
※ 지하1층(137㎡), 지상1층(714㎡), 2~3층(744㎡), 지상4층(652㎡)
- **총사업비 : 98억원(부지매입비 24, 건축비 74) / 도비 100%**
- 수탁기관 : 충북개발공사
- 주요기능 : 도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, 회의실 등 입주

구 분	면 적		입 주 시 설
	㎡	평	
합 계	2,991	906	
4층	652	197	소회의실, 대회의실
3층	744	225	다목적실, 장애인단체(5개소)
2층	744	225	다목적실, 장애인단체(5개소)
1층	714	217	다목적실, 장애인단체(5개소)
지 하	137	42	기계실, 설비실

- 장애인회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,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는, 장애인회관의 시설 및 운영 목적에 대해 규정함.

○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, 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제한, 사용료 반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, 장애인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을 ‘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’로 규정하고 있음. 충청북도미래여성플라자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등 대부분의 시설이 사용허가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장애인 회관의 경우 도 내 법인, 단체로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- 안 제5조제3항에 따른 [별표1]시설 사용료 기준은, 도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한 적정 금액으로 판단되며, 도 내 유사 공공시설인 충청북도미래여성플라자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등의 사용료 기준과도 형평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여짐.

□ 충청북도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료

시설물명	기 준	금 액	냉·난방비
대 강 당	1회/2시간	50,000	30,000
문화이벤트홀	1회/2시간	40,000	25,000
다목적실	1회/2시간	40,000	25,000
강 의 실	1회/2시간	20,000	20,000
영상미디어실	1회/2시간	20,000	20,000

□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시설 사용료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 고
		기 본	추 가	
다목적실	평일2시간 이 내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시간 초과 이용 : 시간당 20%가산 	냉·난방시설이 용시:이용료의 20%가산
	토·일·공휴일 2시간 이내	100,000원		

○ 안 제9조는, 장애인회관 시설(사무공간)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시설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. 이는 장애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- **안 제10조**는, 장애인회관 시설 입주자에게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부담 외의 대부료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48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- **안 제11조, 제12조**는, 장애인회관의 관리·운영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 - 관리·운영의 위탁 대상에 “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”를 포함한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의 위탁 개념보다는 장애인회관 건물의 관리·운영에 초점을 둔 조치로 보여지며, 장애인회관의 주요 기능이 도 단위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및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춰볼 때,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 다만, 회관의 주 사용자가 장애인인 점을 감안할 때,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과 지식이 필요한 바, 수탁자 선정 시 이 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됨.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
 - 수탁기관 공개모집이 10월, 장애인회관 입주단체 선정 심사가 11월, 장애인회관의 준공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, 시기 상 적절하며,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